

# 성명서

##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 위원회

건강연대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140-5호 3층 / 전화 711-0835 / 전송 711-0834 / 홈페이지 www.konkang.or.kr / E-mail kkyd99@hinet.net

날짜 : 2001년 7월 13일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복지 담당기자

제목 : ]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현행 의료법은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의료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의료계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증대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법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이나 의료인, 그리고 의료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새로운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의료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조항 신설과 진료의 거부금지를 담는 등 의료계의 직업윤리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내용 등이 새로이 추가되어 보건의료의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의약 분업 시행과정에서 노정된 의약간 담합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병원내 감염예방,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 그리고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마련 등 미흡하나마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였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등에 따른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등 일정정도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면도 없지 않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정부의 안보다 처벌조항이 완화되는 등 의료계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 우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병원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지도 읽을 수가 없다. 의료의 한 주체인 의료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보호조항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의료문제를 의료인과 의료기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가장 기초적인 의료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가

격조차 알지 못한 채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의료소비자 현실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을 고시하여 전국적으로 같은 가격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국민은 고시된 진료비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서비스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르고 그 내용을 확인 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보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꾸고, 급여와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를 공개·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의료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 병원경영투명성 확보는 건강보험의 적정수가를 산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 해야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리온상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 및 의료장비심의위원회에 외부공익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특별관계인이 5분의 1 이상 참여하여서는 안되고, 공익이사를 3분의 1 이상 참여도록 하는 것도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아울러 적정수가산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의 경영정보가 충분히 공개·제공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진료 거부금지조항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한정하기보다는 진료거부를 선전·유도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인 의료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신설하여 개인이 특정 의료기관이 비리에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조

) 항을 마련하고, 면허의 취소범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벌금형을 받을 때로 강화하여야 하며, 재교부 역시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때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장

) 치를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의 위기는 의료인과 국민과의 신뢰성 상실에 있다. 의료의 질 관리, 병원경영의 투명성, 환자 알 권리 역시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의료계 역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의료인을 규제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신뢰관계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 의료법 개정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이번 의

료법 개정안이 정부나 특정 이해단체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앞에서 밝힌 우리의 요구안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 2001년 7월 13일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 농민, 시민단체 공동대책 위원회

)